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822호 2011. 5. 3.(화)

차 례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285호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503호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510호 신조 공인 공고 ----- 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513호 공시 송달 공고 ----- 9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5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285호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법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조 중 “신고등”을 “신고 등”으로 하고, “대서”를 “대리 작성”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민원접수 청구를”을 “민원접수창구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이상”을 “둘 이상의”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를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민원증”을 “민원 중”으로 한다.

제10조 중 “업무수행중”을 “업무수행 중”으로 하고, “귀청후”를 “귀청 후”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각항” 을 “각 항” 으로 한다.

제13조 중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을 “영 제33조에 따른” 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민원창구별소관업무

(구 본청)

부서별	창 구	담 당 업 무	비 고
총 무	외국인 전입·인감	외국인 체류지 변경, 사실증명, 인감등록 및 변경	
민원봉사	민원접수	민원서류 접수 및 접수증 교부 (유기한민원, 다수·진정고충민원 접수)	
	여권 접수·교부	여권 접수 및 교부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접수	
	어디서나민원	어디서나민원 접수·교부	
	가족관계등록 접수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 접수	
민원봉사 토지정보 건축	통합민원창구 1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발급, 가족관계등록부, 지적(임야)도 등본,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건축물대장 발급,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통합민원창구 2		
	통합민원창구 3		
	통합민원창구 4		
	통합민원창구 5		
토지정보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환지예정지증명 발급	
	부동산계약서검인	토지·건물 이전(증여)등 계약서 검인	
세 무	등록분 등록면허세	등록분 등록면허세 자진신고 접수처리	
	취득세	취득세 자진신고 접수처리	
	면허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차량 취득세	차량 취득세 자진신고 접수처리	
	체납상당	체납고지서 발급, 체납상당	
	지방세 제증명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교통민원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자동차등록증 교부	
	통합민원창구 1	자동차(신규등록, 말소, 변경, 이전, 저당)신고, 이륜차(신규등록, 말소, 변경, 이전)신고,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통합민원창구 2		
	통합민원창구 3		
	통합민원창구 4		
건설기계등록	건설기계 신규등록, 건설기계 저당, 이전, 변경, 과태료		
보건소	민원접수	민원서류 접수	
	진료접수	진료신청	
	수납	진료비 납부	
검 단 출 장 소	가족관계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제신고	
	어디서나민원	어디서나민원 신청·교부	
	세무	지방세 제증명 발급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별표 2]

민원창구 공무원의 범위

기 관 별	범 위
구 본 청 보 건 소 출 장 소	1. 민원실 민원창구에 상시로 배치되어 민원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2. 부서(실·과)에서 민원창구를 상시로 운영하며 민원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3. 보건소 및 출장소의 민원창구에 상시로 배치되어 민원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동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제증명, 어디서나민원, 저소득지원 등 민원창구에 상시로 배치되어 민원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503호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 기 준 일 : 2011. 1. 1
2. 대 상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3번지 외 8,712호
3. 결정·공시항 : 개별주택의 지번, 개별주택가격 등
4. 가격열람 등 :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결정가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 세무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II.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11. 4. 29 ~ 5. 31(33일간)
2. 신청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신청방법 :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주택소재지 구청장에게 제출, 인터넷신청(<http://etax.incheon.go.kr>)
4. 결과통지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510호

신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한 공인의 인영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5. 2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인신조 사유


- 인천광역시서구포상조례 개정(2011.4.18 공포)에 따른 공무원포상 공적심의회 운영

2. 공인의 사용 예정일 : 2011년 5월 2일

3. 신조공인 인영

“별첨 참조”

신 조 공 인 인 영

신조 공인명	규 격(cm)	신조 공인인영	비 고
인천광역시서구 공적심의회위원장인	2.1×2.1		공적심의회 구성 운영 (인천광역시서구포상 조례 제12조)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5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심정경기장 건설사업』의 편입된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해당서류가 반송되거나 송달할 수 없음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심정경기장 건설사업
2.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심정동, 서구 가좌동
3.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시장 송 영 길
4. 열람 기간 : 2011.05.03. ~ 2011.05.18
5.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902~3)
6. 의견서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7. 본 공고에 대한 세부목록(재결신청서 및 사업자 제시액 조서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시책지원팀(☎032-560-5902~3)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소유자께서는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대상 소유자 명단 1부

2011. 5. 3.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물건지	성명	송달주소	비고
1	가좌동 447-1	성이용1	다주면 심정리 222	
2	가좌동 447-3	조형익	인천부 부내면 우각동 152	